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2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0. 20. 조영덕 의원 외 4명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 10.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천 의원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 통보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고서류 항목을 제출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보고서류 제출 의무 규정 삭제
- 제1호(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및 제2호(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삭제

3. 검토보고 (조광현 전문위원)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광역17개소, 기초 226개소 총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법규 조례 7만9천건, 규칙 2만4천건을 일제조사한 결과 조례 1만 6614건, 규칙 3896건 총 2만 510건이 불합리한 조례로 조사됨.
- 정비 대상 유형별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23%,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례가 20%로 나타남.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58%,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 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9%로 조사됨. 우리 구의 경우 10건의 조례가 정비 대상으로 통보됨.
- 이번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정한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짐. 이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관

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우리구 조례는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를, 제2호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조례의 제정한계인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에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보고의 의무를 규정한 본 조항은 조속히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판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